

## 부속서 VI

### 제2.3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

1. 부록에 “B1” 유형으로 분류되어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 수입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.

-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75페센트로
-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페센트로
-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5페센트로
- 2009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.

2. 부록에 “B2” 유형으로 분류되어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 수입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.

-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83페센트로
-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7페센트로
-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페센트로
-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4페센트로
-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7페센트로
- 2011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.

3. 부록에 “B3” 유형으로 분류되어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 수입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.

-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87페센트로
-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75페센트로
-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2페센트로
-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페센트로
-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7페센트로
- 2011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5페센트로

- 2012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2퍼센트로
- 2013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.

4. 부록에 “R” 유형으로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 수입에 대한 관세의 철폐는 이 협정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하고, 그 후 필요하다면 2년 간격으로 검토한다. 그 동안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제3국에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유럽 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.